

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0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 12. 1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상위 근거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인용조명을 일치시키고,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부서명칭 일부조정 및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여유기구 설치규정을 삭제하여 본 조례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명 정비(안 제1조·제8조·제11조)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⇒제112조, 제104조⇒제113조, 제105조⇒제114조 등
- 나. 여유기구(도시개발추진단) 설치규정 삭제(안 제3조의2)
 -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여유기구는 실효성이 없어 규정을 삭제함
- 다.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부서명칭 일부 변경(안 제5조·제7조)
 - 문화공보과 ⇒ 문화관광과, 도시개발추진단 ⇒ 도시개발과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(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”
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과”으로, “부산광역시
사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“(국·실·과·단장의 직급 등)”을“(국·실·과장의 직급
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과장·단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구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3조의2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문화공보과”를 “문화관광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5
호 중 “호적”을 “가족관계등록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도시개발추진단”을 “도시개발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법 제104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제11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다음의 표 중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
한다.

부산광역시 사하구 염색산업 1길 76(신평동 647-5번지)

제9조제2항 중 “구청장” 을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법 제105조” 를 “법 제114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-14번지” 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70(하단동 1151-14번지)” 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여성보육담당” 을 “여성아동담당” 으로 한다.

②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호·제5호 및 제6호 중 “도시개발추진단장” 을 각각 “도시개발과장” 으로 한다.

③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도시개발추진단장” 을 “도시개발과장” 으로 한다.

④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도시개발추진단” 을 “도시개발과” 로 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도시개발추진단장” 을 “도시개발과장” 으로 한다.

⑤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호 중 “도시개발추진단장” 을 “도시개발과장” 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,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과 ----- ----- 부산광역시 사하구 -----</p>
<p>제2조(국·실·과·단장의 직급 등) ① 구본청 국장·실장·과장·단장의 직급과 실·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2조(국·실·과장의 직급 등) ① ----- 과장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실·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총무국, 주민생활지원국, 도시국을 둔다.</p>	<p>제3조(실·국의 설치) 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"구"라 한다)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의2(여유기구의 설치) 여유 기구로 도시국에 도시개발추진단을 둔다.</p>	<p><삭제>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<p>제5조(총무국에 두는 과) ① 총무국에 총무과, 재무과, 세무과, <u>문화공보과</u>, 민원여권과를 둔다.</p> <p>② 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14. (생략)</p> <p>15. 민원행정, 여권, <u>호적</u>, 문서,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16. (생략)</p>	<p>제5조(총무국에 두는 과) ① ----- ----- <u>문화관</u> <u>광과</u>, 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1. ~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----- <u>가족관계등록</u>, ----- -----</p> <p>16.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
<p>제7조(도시국에 두는 과) ① 도시국에 건설과, 재난안전과, 교통행정과, 건축과, 지적과, <u>도시개발추진단</u>을 둔다.</p> <p>② 도시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 16. (생략)</p>	<p>제7조(도시국에 두는 과) ① ----- ----- ----- <u>도시개발과</u>----- 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1.~ 16.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
<p>제8조(설치) ① <u>법 제104조제1항과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</u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.</p>	<p>제8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<u>제113조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</p>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보건소명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위치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관할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하구 보건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7-5번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보건소명	위치	관할구역	사하구 보건소	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7-5번지	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보건소명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위치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관할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산광역시 사하구 염색산업 1길 76(신평동 647-5번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----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보건소명	위치	관할구역	-----	부산광역시 사하구 염색산업 1길 76(신평동 647-5번지)	----- -----
보건소명	위치	관할구역											
사하구 보건소	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7-5번지	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원											
보건소명	위치	관할구역											
-----	부산광역시 사하구 염색산업 1길 76(신평동 647-5번지)	----- -----							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소장) ① (생략) ② 보건소장은 <u>구청장</u>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</p>	<p>제9조(소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 ----- -----</p>
<p>제11조(설치) ① <u>법 제105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을속도 문화회관(이하 “문화회관” 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② 문화회관의 위치는 <u>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-14번지</u>에 둔다.</p>	<p>제11조(설치) ① <u>법 제114조</u>의 규정에 ----- ----- ----- ② -----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70(하단동151-14번지) -----</p>